

특허청고시 제83—12호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3. 2. 9
특 허 청 장

發明獎勵事業推進 要領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전국민의 발명사상양양과 발명인의 사기를 진작시켜 발명풍토를 조성하고 우수발명 창출을 적극 유도하며, 우수발명품의 전시와 시작품 제작지원을 통한 발명의 기업화촉진등 발명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세부요령) ①발명장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한국발명특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발명특허협회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시행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정하는 세부요령중 정부의 지원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특허청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

제 3 조(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 ①발명장려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명의 연구 및 장려에 관한 사업
2. 발명의 기업화를 위한 상담 및 유통알선사업
3. 발명품의 상설전시사업
4. 기타 발명장려에 관한 사업

②회장은 발명장려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정부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 4 조(연구실) ①우수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명장려관에 발명연구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연구실을 이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우수영세발명자 및 개인발명자
2. 중소기업자
3. 산업발전에 기여할 발명을 하는 자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 5 조(상담실) 발명의 기업화알선, 발명품의 매매, 수출등의 유통상담과 금융지원을 알선하기 위하여 발명장려관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 6 조(발명장려품 진열) 회장은 발명사상양양 등 발명장려를 위하여 우수발명품, 발명의기업화성공사례, 기타 발명장려를 위한 자료나 물품등을 전시할 수 있다.

제 7 조(발명품의 위탁전시) 우수발명품 및 신기술제품의 보유자는 당해 발명의 기업화와 실시알선등을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발명장려관에 그 발명품을 위탁전시할 수 있다.

제 8 조(출품대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장려관에 출품하고자 하는 발명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1. 우수발명품(공업소유권법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고안)
2. 우수발명시작품
3. 신기술창작품
4. 기타 전시가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 9 조(출품신청) 발명장려관에 출품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회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부
2. 등록원부 사본 2부
3. 출품물의 사진 2매(3//×4//칼라)

제10조(출품규격 및 진열기간) ①출품물의 규
격은 부피 1m³, 무게 70kg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을 요하
는 경우 또는 실물이 아닌것은 사전에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발명장려품의 진열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전시품선정) ①회장은 발명장려관의 전
시물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심사위원회가 전시물품을 선정할때에는 발
명의 기술성, 발명의 기업화 가능성, 발명의
양도·실시하여 가능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및 관리비용) ①발명장려관의 전
시대등 기본시설은 회장이 설치한다. 다만,
출품자가 특수시설공사를 하고자할 때에는 출
품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제1항의 전시시설의 일반관리비용은 회장이
부담하고 그 이외의 특수관리비용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13조(관람시간) 발명장려관의 관람시간은 회
장이 정하여 게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관람료등) 발명장려관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제15조(준수사항) 발명장려관의 출품자, 이용
자 또는 관람자는 회장이 정하는 발명장려관
의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보조

제16조(시작품 제작보조)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
고 발명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발
명의 시작품제작을 지원한다.

제17조(신청인의 자격) 발명의 시작품제작을 신

청하고자 하는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
세발명자, 개인발명자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
한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발
명을 보유한자라야 한다.

1.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었
을 것.
2. 당해 권리가 시작품제작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말까지 존속되는 것일 것.

제18조(신청절차) 시작품제작 신청을 하고자하
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매
년 3.31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기술선정위원회 설치) ①회장은 시작품
제작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기술선정위원회는 한국발명특허협회 상근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특허청 관계
공무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정보실장, 한국
기술개발(주)기술담당이사, 한국기술진흥(주)
기술담당이사, 공과대학교수 2인, 발명관계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③기술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선정기준등) ①시작품제작대상의 발명
을 선정함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1. 발명의 기술적 우수성
2. 발명의 기업화 가능성
3. 발명의 국가산업발전 기여도
4. 총제작비중 자기부담능력등

②시작품 제작선정에 있어 시작품제작 대상발
명이 경합될때에는 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업 순으로 선정하고 개인발명자가 경합
될때에는 국제발명품전시회 입상자와 국내에
서 우수발명자로 입상된 자를 우선할 수 있다.

제21조(대상발명의 선정절차) ①회장은 신청된
시작품 제작발명에 대하여 기술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대상을 선정한다.

②회장은 예비선정된 발명을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발명의 기업화가능성, 시작품제작상의
문제점, 기술보완, 제작소요기간, 제작비용,
제작대상기관등을 검토케하고 그 결과를 참고
하여 기술선정위원회에서 최종심사 선정한다.

제22조(보조금 교부신청) ①회장은 최종 선정된 발명의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보조와 자기부담으로 구분 계상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특허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제1항의 보조금부신청에 시작품 제작사업계획 및 시작품대상 발명선정을 위한 기술검토비용과 시작품제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관리인건비등 부대경비에 관한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교부기준) ①시작품 제작보조금 교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세발명자는 제작비용의 전액범위내
2. 개인발명자는 제작비용의 80%범위내
3.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50%범위내

②제1항의 제작비용액은 기술검토기관의 제작비 추징액과 원가조사금액을 참고하여 시작품 제작기관("기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체결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보조금 교부한도액은 신청인 1인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작품제작의 난이도에 따라 기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 교부승인) ①특허청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고 이를 회장에게 통보한다.

②보조금교부는 당해사업의 진도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당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미리 수시로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일시에 전액을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시작품 제작의뢰) ①회장은 시작품제작기관을 선정하고 제작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시작품제작 계약체결전에 시작품제작비용에 대한 자기부담 금액중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시작품제작의 완료시에 자기부담금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시작품 제작비 지급) ①회장은 시작품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검사확인하고 제작비용액을 정산하여 당해 시작품제작기관에 지급한

다.

②회장은 제작계약을 체결할때와 시작품제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작비용의 일부를 제작진행정도에 따라 시작품제작 완료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작품전시등 기업화 알선) 회장은 기업화를 위하여 개발시작품 전시, 특허권의 양도, 실시허여 합작투자 및 금융지원등을 알선할 수 있다.

제28조(시작품제작협조 및 보고) 회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당해 시작품제작에 관한 협조나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제29조(시작품제작의 정지 및 취소) 회장은 시작품제작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작품의 제작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집행된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품제작대상으로 선정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2. 시작품제작비중 자기부담금액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 및 사전협의를 거부하거나 보고를 태만히 한 때,
4. 시작품제작대상으로 선정된 발명고안을 호장과의 사전협의없이 당해 특허권을 양도한 때,
5. 기타 이요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 4 장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제30조(전시회 개최)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이하 "전시회"라 한다)를 매년 1회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다만, 개최기간, 장소등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개최기간 : 9월 1일—9월 10일
2. 개장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토, 일 공휴일 포함)
3. 장 소 : 한국종합전시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65)
4. 전시장규모 : 특허청장, 이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5. 주최및주관 : 특허청주최 한국발명특허 협회 주관

제31조(출품자격)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내국인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을 등록한 자 및 그 승계인
2. 발명품을 창작, 고안한 초 중 고등학생
3. 신기술 또는 창작품을 개발한 자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2조(출품물) 출품물은 실물을 원칙으로 하며, 모형, 견본등을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출품규격) 전시회 출품물의 규격은 가로 150cm, 세로 100cm, 높이 150cm, 무게 70kg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동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을 요하는 경우나 현물이 아닌것은 회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출품절차) 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출품심사등) ①회장은 출품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심사위원회가 출품물을 심사할 경우에는 출품발명의 기술성, 기업성, 국민 경제상의 기여도, 이미 다른 전시회의 출품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고 학생발명품의 경우에는 창의성, 연구성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제36조(시상) ①회장은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발명품에 대한 시상을 특허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우수발명품에 대하여는 상장과 상금, 트로피 또는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전시장배정) ①회장은 출품물의 전시위치, 면적등 전시장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부스를 배정하며, 출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회장은 전시장의 전체적인 조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정된 부스를 변경할 수 있다
③출품자는 배정된 부스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없다.

제38조(기본시설) ①전시장의 기본시설 이외의 부스장치물 공사는 출품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②전시장내의 전화설치료, 전화사용료, 전기사용료, 급배수설치비등의 경비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39조(전시품 반입반출) ①출품자는 회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시품의 반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장치물 및 전시품의 철거 및 반출은 회장이 정하는 기일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0조(준수사항) 출품자는 회장이 정하는 전시회의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발명의 날 행사개최

제41조(행사개최) 발명의 날 행사를 매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다만, 행사개최장소등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일시 : 5월 19일(세종대왕 즉위기 발명일) 10시
2. 장소 : 세종문화회관
3. 주최 및 주관 : 특허청주최, 한국발명특허협회 주관

제42조(시상) ①발명사상양양 및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발명진흥유공자상과 우수특허관리업체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발명진흥유공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국내의 발명품전시회에 입상된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자
 2. 국내 우수발명으로 선정된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자.
 3. 우수발명고안의 출원등록실적이 많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자.
 4. 여성발명자
 5. 학생발명자
 6. 기타 발명특허에 공이 있는 자
- ③우수특허관리업체는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신고를 필한 기업체로서 사내 특허관리제도를 우수하게 운영·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중에서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과 상금, 트로피 또는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제43조(신청절차)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나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신청요령에 따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제4호서식) 2부
2. 공적조서 2부
3. 우수특허관리업체현황 2부(우수특허관리업체상에 한함)

제44조(심사) 회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를 특허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 6 장 외국출원비용 보조

제45조(외국출원비용보조)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출원비용을 보조한다.

제46조(신청자격) 외국출원비용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한 대한민국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제47조(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거래은행구좌번호가 기입된 별지제 5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출원증빙서류
 - 가.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국내에서 작성한 출원명세서 또는 발명고안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
2.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
 - 가. 외국환은행발행 수납증 사본 또는 송금사실의 증빙서류
 - 나. 외국변리사 청구비용명세서 사본등 해외비용 증빙서류
 - 다. 국내변리사발행 간이세금계산서등 국내

비용 증빙서류

3.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 각 1통(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함)

제48조(신청기간 및 대상) 보조금교부의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반기

가. 신청기간 : 매년 5.1—5.31

나. 신청대상 : 전년도 11.1부터 당해년도 4.30사이 에 외국에 출원한 발명. 고안(1983년도에 있어서는 1982년 10.1부터 1983년 4.30사이 에 출원한 발명. 고안으로 한다.)

2. 하반기

가. 신청기간 : 매년 11.1—11.30

나. 신청대상 : 당해년도 5.1부터 10.31사이에 외국에 출원한 발명. 고안

제49조(교부기준) ①보조금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원건별로 30만원을 교부하되 외국출원비용이 60만원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의 50%를 교부한다.

②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보조건수는 5건범위 내로 한다.

③제48조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결과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부한다.

1. 개인발명인의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개인발명인 에게만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비율에 따라 안분조정하여 교부한다.
2. 개인발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개인발명인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중소기업자에게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비율에 따라 안분조정하여 교부한다.
3. 개인발명인, 중소기업자 기타 신청인의 신청총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때에는 개인발명인, 중소기업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나머지 잔액을 기타 신청인에게 제1항의 기준에 의한 비율에 따라 안분조정하여 교부한다.

제50조(보조금교부) 특허청장은 제48조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거래은행구좌에 입금한다.

제51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출원인의 명의변경
2.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및 등록의 여부
3. 기타 특허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 7 장 국제전시회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52조(국제전시회 입상자 보상금 지급) 우수 발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입상한자의 사기진작 및 발명의욕을 고취코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3조(지급대상) 보상금은 협회가 출품업무를 주관(공동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국제전시회에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을 받아 출품한 입상자에게 지급한다.

제54조(출품심사위원회 설치) ① 우수한 발명·고안을 선별하여 출품하기 위하여 협회에 출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출품심사위원회는 회장이 정하는 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발명품의 기술적 우수성, 다른 국제전시회의 출품여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③ 출품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

적인 사항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5조(지급기준) ① 제5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당해 국제전시회에서 동일인이 2개이상의 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그중 상격이 높은 1개상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고안품으로 다시 입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상 : 500만원이하
2. 금상(특별상, 준대상포함) : 300만원이하
3. 은상 : 200만원이하
4. 동상 : 100만원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보상액총액이 당해년도에 확보된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안분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지급시기등) 보상금은 협회가 종합하여 신청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말에 당해년도 국제전시회 입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특허청고시 제82-9호 제82-10호, 제82-11호는 이를 폐지한다.